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존속기간 5년 연장 〉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4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존속기간 5년 연장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9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존속기간 5년 연장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u>7년간</u> 존속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 ----- ----- <u>12</u> <u>년간</u> -----.

현행법¹⁾에서는 미세먼지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미세먼지등의 배출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

저감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²⁾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단장³⁾ 포함 18인으로 구성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임(※참고자료1 참조).

위원회 및 기획단은 법 제정 당시 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19.2.15)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규정하였고, 2024년 1월 동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여 7년간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2026년 2월 14일 만료될 예정임.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2031.2.14)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경우 산업·교통·선박·농업 등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회재난⁴⁾에

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총 2인(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장)

3)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겸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당하는 문제로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특정 개별 부처로의 이관이 어렵다는 점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간대로 활동이 만료되는 경우 「제2차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5~’29년)」 시행 기간 중에 위원회가 종료되어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⁵⁾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26억 8,900만원(연평균 5억 3,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5) 다만 법률 제15718호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1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안 부칙 제2조)	449	540	541	542	543	74	2,689	538

주: 1. 2026년은 10개월분, 2031년은 2개월분의 추가재정소요

2. 본 추계 결과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2025년도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운영 방식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1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개요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

- **(목적)** 정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만한 대기질 개선 효과 부족**에 따라 특단의 대책 필요성에 대한 여론 고조로 **위원회 설립**(‘19.2월)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 등

** 2015~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6 $\mu\text{g}/\text{m}^3$	26 $\mu\text{g}/\text{m}^3$	25 $\mu\text{g}/\text{m}^3$	23 $\mu\text{g}/\text{m}^3$
연간 미세먼지 나쁨일수	46일	75일	64일	61일

- **(현황)**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위원
 - 정부위원(당연직 18명)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외 관계부처 장관 등
 - 민간위원(위촉직 18명) : 국무총리 위촉, 민간 공동위원장 등
-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법 제10조)

①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②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③ 미세먼지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④ 국민건강 관리 ⑤ 국제협력 등

- **(실적)** 본회의(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 총 117회(‘25.9월 기준) 개최
 - (성과) ‘24년 초미세먼지 목표농도 초과 달성*

* 제1차 종합계획의 ‘24년 목표농도 16 $\mu\text{g}/\text{m}^3$ 대비 15.6 $\mu\text{g}/\text{m}^3$ 를 달성(‘16년 대비 40%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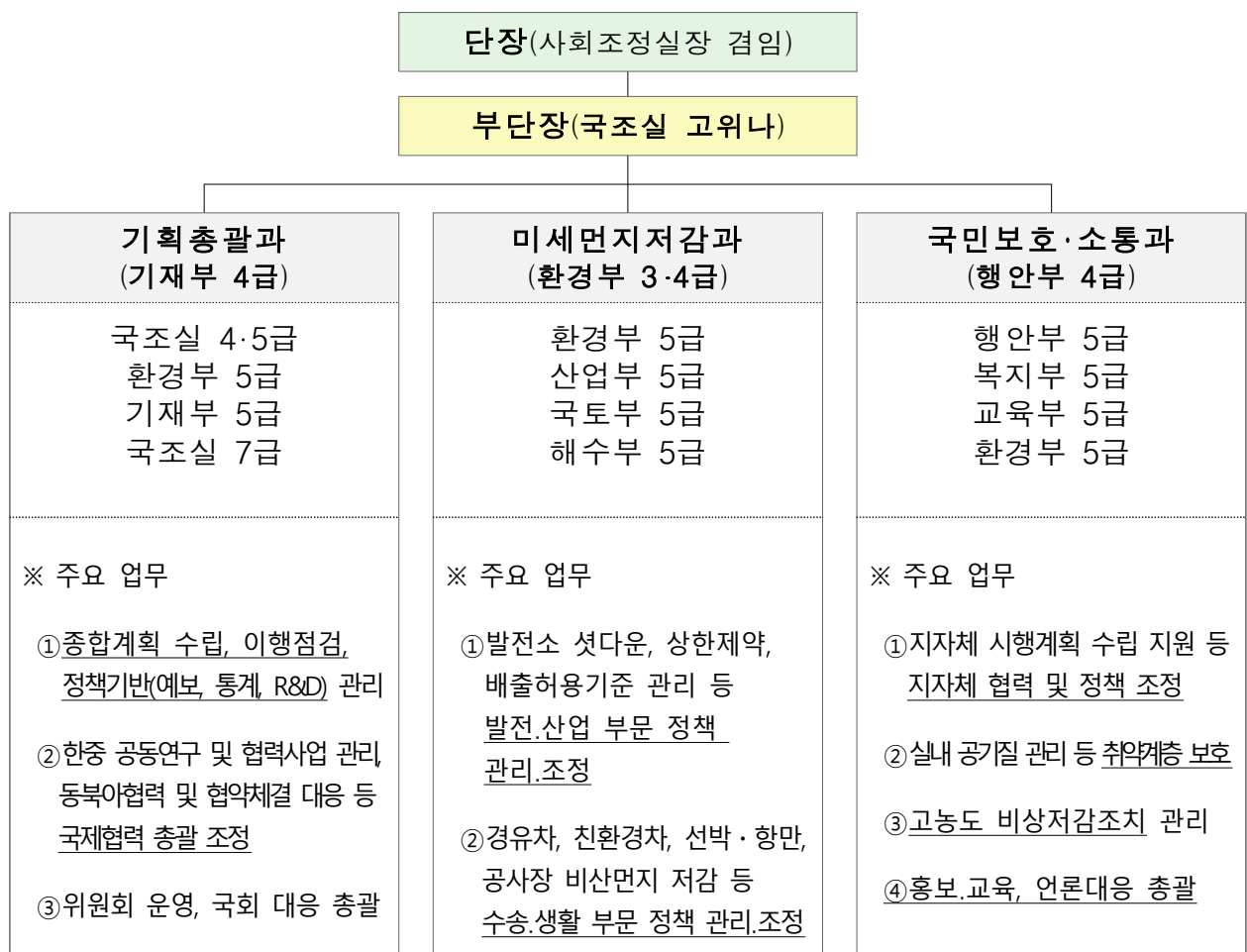
□ 그간의 경과 ※ 존속기간 관련

- **(최초)**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19.2.15~‘24.2.14) **한시*** 존속(미특법 부칙 제2조)
 - ※ (사유) 5년후 미특위 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게 함으로써 미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몰 조항 신설
- **(정비계획)**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9월) 통해 **폐지 방침**(행안부)
- **(연장결정)** 2년 연장 미세먼지법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23.12.28)
 - ※ (제안) 존속기간을 5년 연장(김영진 의원), 2년 연장(임이자 의원)
 - (최종)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 통합 조정안(2년 연장 후 추가 연장 여부 결정)
 - 제1차 종합계획 평가 및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2년 연장

※ 참고자료2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법적 근거 및 조직도

□ **(법적근거)** 미특법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 **조직 : 1단(겸임) 1부단장 3과**



※ 참고자료3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총 117회)

□ 본회의 개최 실적 : 총 16회 개최

○ 국무총리 주재 8회, 민간위원장 주재 8회

※ (국무총리 주재) 종합계획 수립(5개년) 및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매년) 등
(민간위원장 주재) 종합계획 연차별 평가 등

연도	차수(일자)	안건명	주재
2019	제1차(2.15)	·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 미특위 운영계획	국무총리
	제2차(6.28)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대책 · 항만·선박분야 저감방안 · 농업·농촌분야 저감방안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국무총리
	제3차(11.1)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 지자체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이행계획(서울·충남·경남)	국무총리
2020	제4차(11.2)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시행계획 ·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지자체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이행계획(충남·경남·충북·충청도·평택시)	국무총리
2021	제5차(7.8)	· 미특위 운영세칙 개정(당연직 대리참석 규정 보완)	민간위원장
	제6차(8.27)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년 추진실적 평가	민간위원장
	제7차(11.29)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계획	국무총리
2022	제8차(3.20)	· 미특위 운영세칙 개정(분과위 개편)	민간위원장
	제9차(10.26)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추진실적 중간 평가	민간위원장
	제10차(11.25)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2.12~'23.3)	국무총리
2023	제11차(11.24)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3.12~'24.3)	국무총리
	제12차(12.1)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2년 추진실적 평가 · 2020~2022년 상반기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민간위원장
2024	제13차(6.11)	· 2022년~2023년 상반기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민간위원장
	제14차(11.27)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4.12~'25.3)	국무총리
	제15차(12.9)	·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추진실적 종합 평가	민간위원장
2025	제16차(7.3)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도 시행계획 2023년 추진실적 종합평가	민간위원장

□ 본회의 외 개최 실적 : 총 101회 개최

○ 민간위원 전체회의 27회, 분과위원회 74회

※ 미세먼지 관리 정책 조정 실무 및 종합계획 분기별 이행점검 및 전체회의 상정 전 사전 조율 등 논의